



June 2025

NEWSLETTER

법제컨설팅 그룹 | Government Affairs Group

새정부의 주요 입법 및 정책과제와 기업의 시사점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01

제21대 대통령선거

직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2025. 4. 4)으로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되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

2025. 6. 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17,287,513표(49.42%)

 당선

국민의힘 김문수

14,395,639표(41.15%)

개혁신당 이준석

2,917,523표(8.34%)

02

새정부 출범과 주요 입법 및 정책과제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3년여 만에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새정부 출범으로 향후 큰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국회의 의석정수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인 171석을 차지하고 있어 새정부의 정책적 변화는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도 실효적으로 뒷받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새정부 출범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등을 토대로 특히 **기업경영**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새정부의 입법 및 정책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예상되는 정책적 변화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유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CONTACT



고문/변호사 우윤근

T: 02.6386.7970
E: yooneun.woo@leeko.com



고문 진정구

T: 02.6386.6206
E: jeongku.jin@leeko.com



변호사 이종석

T: 02.772.4335
E: jongseok.lee@leeko.com



외국변호사 홍윤태

T: 02.772.5921
E: yuntae.hong@leeko.com

1. 국회의 기업증인 출석요구 강화	4
2. 소위 '노란봉투법' 제정	5
3.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6
4. 비정규직 보호 강화	7
5.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8
6. 근로시간 단축	9
7. 근로자 정년 연장	10
8. 건설공사 안전 강화	11
9. 중대시민재해 대응 강화	12
10. 기업지배구조 개선: ①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	13
11. 기업지배구조 개선: ②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14
12. 기업지배구조 개선: ③ 집중투표제 의무화	15
13. 기업지배구조 개선: ④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16
14. 기업지배구조 개선: ⑤ 자사주 소각 의무화	17
15. 온라인 플랫폼 개선	18
16. 플랫폼 수수료율 차별 금지	19
17. '을'의 단체협상권 확대	20
18. AI산업 집중 육성	21
19. 전략산업 세제혜택 확대	22
20. 반도체특별법 제정	23

21. 벤처투자시장 육성	24
22. 주식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25
23.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26
24.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	27
25.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28

26. 에너지 전환과 건설업	29
27. RE100 산업단지 조성	30
28. 기술탈취 근절	31
29.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 대응	32
30. 철도 지하화 추진	33

31. 상속세제 개선	34
32. 보험시장 확대	35
33. 통신분야 개선	36
34. 방송·미디어 개선	37
35. 사이버 보안 개선	38

36.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	39
37.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	40
38.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41
39. 의료개혁 추진	42
40. 수사기관 구조 개혁	43
41. 재판받을 권리 강화	44

1. 국회의 기업증인 출석요구 강화

정책 개요

- 국가가 기업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여도 해외출장 등을 사유로 불출석하거나 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도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미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음.
- 이에 국회의 증인출석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국회의 권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있음.

입법 및 정책과제

- 국회의 증인출석요구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이 2024. 11. 2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같은 해 12. 19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는바, 폐기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증인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질병·부상·해외체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온라인을 통하여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함.
 -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도를 현재의 국정감사 및 조사 외에 중요한 안전심사나 청문회까지 확대함.
 -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최근 민주당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도를 현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로 확대하고,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음(한국경제, 2025. 5. 22).
- ※ 관련 입법안
 - 본회의에서 의결(2024. 11. 28)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폐기됨)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2024. 10. 23) 및 이병진의원 대표발의(2025. 3. 11)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시사점

-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대안)의 경우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으나 국회의 권능 강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입법이 재추진될 수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영업비밀보호를 사유로 한 자료제출 거부 금지의 기업의 영업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재논의될 것으로 보임.
- 기업증인의 국회출석 및 기업 관련 자료의 국회제출 등 대국회 관련 업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와 관련된 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2. 소위 '노란봉투법' 제정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대선공약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 보장”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음.
- 이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합활동 내지 쟁의행위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위 '노란봉투법'을 제정하겠다는 취지임.

입법 및 정책과제

- 노란봉투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의된 법률안마다 상이하나, ① 도급사업주 등 사용자 범위의 확대,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조합원 범위의 확대, ③ 쟁의행위의 대상 확대, ④ 조합활동 내지 쟁의행위에서 비롯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함.
- 노란봉투법은 제21대 국회의 본회의에서 두 차례 통과되었으나 직전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되었음.
- 현재 관련 법률안이 재발의되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향후 입법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입법안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2025. 3. 11) 및 박해철의원 대표발의(2025. 5. 12)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시사점

-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기존에 노동조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던 노동자와의 노사관계에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파업이나 점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지게 되어 노사관계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만, 과거 전례에 비추어 실제 입법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 있음.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기업은 소속 노동조합과의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의 노사관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 포괄임금제는 노사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실무상 운영되어 온 제도로 대법원판결로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 왔었음.
-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정당한 임금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제기되었음.

입법 및 정책과제

-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 포괄임금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우원식의원 대표발의안). 이 개정안은 포괄임금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한편,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됨.
- 제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새정부에서 추가적인 개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음.

※ 관련 입법안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2024. 9. 10)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시사점

-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실무상 널리 활용되어 온 제도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경우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 왔음.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남용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과중한 노동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노동계의 지적을 새정부는 정책공약으로 수용한 것임.
- 민주당이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를 노동분야 정책과제로 명확히 함에 따라 그동안 법원의 판결로 관행화된 포괄임금제 약정은 법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음.
- 다만, 경계계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동안 판례에서 제시한 일정한 요건을 법에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인바, 기업은 이에 맞추어 사전적 준비작업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4. 비정규직 보호 강화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 강화 및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도의 단계적 추진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음.
- 그리고 당선인은 배달 노동자, 택배기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간담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정도 보수는 받아야 한다는 최소보수제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히,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의 도입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음.

입법 및 정책과제

- 현재 자영업자 및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실제로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함.
- 이러한 인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의무화할지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험보상법 등 법령 개정이 요구되며,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그 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할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임.

기업의 시사점

-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다가 무산된 사례가 있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포괄적인 보호를 위하여 동 법안의 제정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일부 보호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함.
-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화가 현실화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플랫폼 사업자인 기업에 전가될 여지가 있으며, 최저보수제가 도입될 경우 계약단가의 전반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5.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정책목표로 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하였음.
- 그리고 당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고,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였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투자 규모,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계획, 산재발생현황,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계획 등을 공시하는 기업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위험성평가 미 실시 사업장에 대한 벌칙 도입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착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입법 및 정책과제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에는 원청의 의무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원청의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마련될 가능성 있음.
- 건설안전정책의 경우 제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임기만으로 폐기된 김교흥의원 대표발의(2021. 6. 16) “건설안전특별법안”의 제정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기업의 시사점

- 향후 개정 법령의 내용에 따라, 원청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도 원청업체 소속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음.
- 그 과정에서 인력이나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될 수 있는바(예컨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배치가 의무화된다면 추가적인 인력 확보 필요), 기업은 안전관리 관련 조직 확대와 예산 확보 등을 사전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 붕괴·화재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새정부는 건설안전 분야에 특화된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보임. 건설업종은 수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2024년 기준 39.7%)으로 사망자 감축을 위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건설안전특별법안 등 관련 입법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6. 근로시간 단축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주 4.5일제의 도입·확산 등 노동시간 단축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음.
- 주 4.5일제는 임금 삭감 없이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인데,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주 4.5일제가 도입될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1주 36시간으로 단축될 것임.

입법 및 정책과제

- 2003년 주 5일제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임금 삭감 없이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면서, 여기에 포괄임금제 폐지까지 더해진다면 기업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게 될 것임.
- 또한, 인력운영과 생산성 등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 변경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임.

※ 관련 입법안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2025. 2. 27)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시사점

- 근로시간 단축은 국제적인 추세이고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화 방안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 수립,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적정 임금수준 유지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법정 정년 65세의 단계적 연장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음.
- 정년 연장은 기존 법정 정년인 만 60세를 넘겨 근로 가능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정년 연장의 목적은 고령 근로자의 생계 유지 및 경력 활용을 도모하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시차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를 보완하는 데 있음.

입법 및 정책과제

- 현행 법령은 공공기관과 상시 3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최근에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이 향후 논의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 한국은행 보고서: 고령근로자 1명 증가시 청년근로자는 약 0.4~1.5명 감소,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령자 고용을 감소시키는 인사노무 정책을 시행, 결국 정년연장은 기업의 연공형 임금체계와 맞물려 있음. 우리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은 고령자 고용법을 점진적으로 개정하여 60세 정년, 65세 고용확보, 70세 취업기회 확보라는 장기적인 계속근로 로드맵을 제시함.
-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현행 정년 60세를 유지하되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인 65세(2033년)까지 고용을 늘리되 각 기업실정에 맞게 임금체계 등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 관련 입법안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2024. 8. 13)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시사점

- 정년연장 이슈는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 왔으나 다른 이슈와는 달리 노사단체가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이견이 제기되고 있음.
- 기업은 어떠한 형태로든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 인사·재무·조직관리 등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받게 되므로 법안 논의 진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유념하고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발주에서 설계·시공·감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될 예정임.
- 특히,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입법 및 정책과제

- 현재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강화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수년간 검토 중에 있음.
- 향후 고위험 공정 및 구조물에 대한 설계안전성 심의제도 확대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됨.

기업의 시사점

-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단계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건설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임.
- 감리인의 안전관리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감리비용 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스마트 안전장비(AI, IoT, 드론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관련 장비업체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기업 내부의 안전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입찰단계에서 안전대책이 기술점수에 반영되는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관리 비용을 계약조건에 반영하는 노력이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임.

9. 중대시민재해 대응 강화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국민생활 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를 정책목표로 하여, ①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하여 원인 철저 규명 및 결과 공개, ② 재난안전 산업 육성 및 소방·화재 안전 장비 확충, ③ 항공철도사고위원회 개편으로 항공 참사 등 대형 사고의 조사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④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항공사·공항시설 안전 관련 투자·정비 점검 강화, 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등을 정책과제로 발표하였음.
- 최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회재난이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함. 이러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적극 적용하여 책임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음.

입법 및 정책과제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사회재난, 설계·제조·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원료·제조물 사고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적극 적용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이 적극 요구될 수 있음.
-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안전권'을 선언하며, 기업 및 단체도 안전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법안에는 안전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나, 생명안전종합계획, 안전관련기준 등을 통해 관련 규제가 구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관련 입법안

- 박주민·한창민·용혜인의원 대표발의(2025. 3. 10)의 "생명안전기본법안"

기업의 시사점

- 중대산업재해에 비해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경우가 많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새정부의 정책기조를 고려하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조치의무의 실질적인 이행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대형 사회재난은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집중되고, 기업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음. 향후 입법 및 정책변화에 따라 기업의 법적·사회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사회재난 예방 및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10. 기업지배구조 개선: ①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주식회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을 통하여 이사의 직무수행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입법 및 정책과제

- 직전 정부에서 무산된 상법개정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외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입법안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2024. 11. 19) 및 윤준병의원 대표발의(2025. 4. 22)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시사점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실제 회사의 운영과 이사의 직무수행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의 기준에 관한 학계·실무계의 논의 및 판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의 상장 사례, 합병비율의 불공정 주장 사례,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사례 등 그동안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의 침해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회사의 조직재편이나 자본거래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체주주의 이익이 공정하게 대우되었다는 점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1. 기업지배구조 개선: ②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여 주주권 행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입법 및 정책과제

- 직전 정부에서 무산된 상법개정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입법안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2024. 11. 19), 윤준병의원 대표발의(2025. 4. 22) 및 이소영의원 대표발의(2025. 4. 22)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시사점

- 기 발의된 상법개정안을 고려하면,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의무가 부여되는 상장회사의 범위, 전자주주총회의 내용 및 운영의 세부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자주주총회 운영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상법시행령의 개정 상황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지 등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한 정관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IT인프라 구축 등 기술적인 조치에 관한 준비도 중요할 것임. 특히,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가 의무화되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적시에 이러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12. 기업지배구조 개선: ③ 집중투표제 의무화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현행 상법상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를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소수주주 보호 강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하고자 할 예정임.

입법 및 정책과제

- 집중투표제 배제 규정은 현행 상법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미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
- ※ 관련 입법안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2024. 11. 19) 및 윤준병의원 대표발의(2025. 4. 22)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시사점

- 집중투표제 도입이 강제될 경우, 기존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실무 차원에서 집중투표제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다수 이사의 변경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사회 구성 등에 따라 회사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기업으로서는 연속성 있는 회사 운영을 위하여 시차임기제 도입 등의 사전 대비를 고려할 수 있음.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현행 상법상 대규모 상장회사가 최소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입법 및 정책과제

-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현행 상법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며, 국회에 발의된 윤준병의원안에서는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입법안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2024. 11. 19) 및 윤준병의원 대표발의(2025. 4. 22)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시사점

-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확대되므로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소수주주들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바, 기업으로서는 일반주주들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주주총회 안건별로 면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음.

정책 개요

- 현행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사주의 처분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새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여 주주이익을 환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입법 및 정책과제

- 상장회사에게 자사주 소각의무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미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

※ 관련 입법안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2025. 2. 17)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시사점

- 기 발의된 개정안은 상장회사로 하여금 주식의 소각, 주주에 대한 지분율에 따른 균등배분 등 열거된 방법으로만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사주 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중대한 변화이므로 추후의 입법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업으로서는 차등의결권 제도, 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 제도하에서 실무상 자사주 보유 및 처분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방식의 자사주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함.

15. 온라인 플랫폼 개선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와 소상공인·입점업체의 권익 및 교섭력 강화, 상생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및 소비자 보호와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정책목표로 하여, ①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영세 소상공인 대상 우대수수료 제도화, ② 사회적 대화 기반의 합의 모델, 광고 규제·전자상거래법 개정 병행, ③ 플랫폼 공정화법의 신속처리안건 추진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음.
- 이는 그동안 배달앱·커머스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수수료 불공정 논란 지속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강제규제 필요성이 확산되고,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연동 및 국내법적 규율 강화 필요성이 증대된데 따른 것임.

입법 및 정책과제

- 온라인 플랫폼 제도 개선을 위하여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안”의 제정을 통한 거래조건 공개, 계약서 교부, 불공정행위 금지, 분쟁조정 등 명시를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감시·제재 체계 강화하며, 을지위위원회 통한 민간 협력형 상생기구 운영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입법안

- 오기형의원 대표발의(2024. 6. 12), 민형배의원 대표발의(2024. 6. 24), 김남근의원 대표발의(2024. 7. 5), 박주민의원 대표발의(2024. 7. 5), 김현정의원 대표발의(2024. 8. 6), 서영교의원 대표발의(2024. 8.9) 등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안”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2025. 5. 26) 및 한민수의원 대표발의(2025. 3. 20)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시사점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공정 수수료·검색우대 등은 법적 제재 대상으로 거래조건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이며, 입점업체 협상력 강화와 ESG 기반 상생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아울러, 수수료 체계 정비, 계약서 개정,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입점업체와의 소통 강화 및 규제기관과의 협의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또한, 국제 규제(EU DMA 등)와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시 TF 운영을 통하여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6. 플랫폼 수수료율 차별 금지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시장 구축의 선도국이 되고 모두가 행복한 배달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방지 및 입점업체(자영업자) 보호를 목표로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상한 설정 및 입점업체 간 수수료율 차별 금지 법제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입법 및 정책과제

- 기존 자율규제 방식인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하여 중개수수료 인하 및 차등수수료제 등 상생안을 마련하였으나 실효성 부족으로 비판이 많았는데, 법률 개정을 통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입법(전자상거래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이 추진될 가능성 있음.
 - 전자상거래법 개정(박주민의원 대표발의) :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 신설
 - 공정거래법 개정(이강일의원 대표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율 상한을 정하여 고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중개수수료·광고비 등 거래조건의 구체적 산정기준을 공개, 입점업체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부여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의 내용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규율과 입점업체 등 '을' 사업자와의 거래 공정화 구현이 있는데, '을' 보호에 필요한 내용으로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이루어지면서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그 세부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될 수 있음.

기업의 시사점

- 법률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한 부담이 존재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을 통하여 수수료율과 범위, 부당한 차별의 판단기준 등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크므로 입법 및 정책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하여 기업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중개수수료율이 법률로 제한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수수료 구조 재검토, 수수료율 책정 기준 명확화가 필요함.

17. '을'의 단체협상권 확대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겠다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이는 갑을 관계의 공정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차원에서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상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입법 및 정책과제

- 을의 협상력 강화 방안으로 단체협상 5법(온라인플랫폼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중소기업상생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이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임.
-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2025. 4. 17)되고 이번 대선 공약으로도 포함되어 입법 가능성 높다고 할 것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단체교섭권한 부여, 가맹점주의 전면적 협의 의무제(협의 요청 거부시 시정명령, 고발 등의 제재 가능) 도입 등

※ 관련 입법안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2024. 6. 26)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시사점

-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도입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복수 단체의 반복적 협상 요청 시 경영 부담 및 행정적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단체협상 요청 시 표준화된 응대 절차 및 내부 프로토콜 마련 이 필요함.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집중 점검에 대비한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필요함. 즉, 가맹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강제 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수취 및 신유형 불공정행위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사전 자가 점검과 법률적 정비가 요청됨. 기업은 이러한 이슈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고 사전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공공·민간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이를 위해 국가 AI 투자 100조원 규모 계획 제시와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함.
- AI 기본사회 구축을 위하여, 한국형 챗GPT를 개발하여 전국민에게 무료 제공하고 AI 융합 기반의 제로리스크 안전사회 구축을 제시함.
- 그 외, 글로벌 AI-이니셔티브 전략을 추진하고, AI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함.

입법 및 정책과제

-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본격 시행 이후 시행령 정비 및 관련 조직 정비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추가적인 법 개정이 예상됨.

※ 관련 입법안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2025. 2. 21), 이언주의원 대표발의(2025. 4. 11) 및 황정아의원 대표발의(2025. 4. 17), 정동영의원 대표발의(2025. 5. 14)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2025. 5. 14)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시사점

- AI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에 따라 R&D 자금 지원,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산업별 AI 도입 촉진, 세액공제, 인프라 제공 등의 혜택이 확대될 것이므로 관련기업들의 R&D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활용하여 기업의 생산, 서비스, 마케팅 등 핵심업무에 AI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새정부는 공공 및 민간 데이터의 개방·연계·활용을 중시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함. 이에 기업은 데이터 수집·저장·분석체계를 정비하고,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 가능성을 확보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신사업 개발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유형의 국제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특히, 지식재산권 분쟁, 외국인 투자자와의 분쟁, 핵심 소재 공급 관련 분쟁 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국제소송 또는 국제중재 관련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을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식별하여 선제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분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그 밖에 AI 책임 강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9. 전략사업 세제혜택 확대

정책 개요

-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통상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산업 국내산업 촉진세제 도입을 제시함. 기존 통합투자세액 공제와 별도로 첨단제품에 대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여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 동안 부여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엄격한 요건 하에 세액공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함. 국내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반도체에 대한 최대 생산세액 공제 10%를 적용하고 반도체 해외 공장의 국내복귀(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임.
- K-방산을 국가대표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AI 등 R&D 국가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을 추진할 예정임.
-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를 위하여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특히 일반 국민 및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임.
- K컬처 통한 문화강국 건설 위한 R&D 예산지원 및 세제혜택 약속. 문화예술 R&D, 정책금융,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하고, K-콘텐츠에 대한 세제혜택을 웹툰으로 확대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함.

입법 및 정책과제

- 법인세 세액공제 및 기타 세제혜택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구체적 내용이 정비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법령 개정이 예상됨.

※ 관련 입법안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2025. 3. 7) 및 정일영의원 대표발의(2025. 3. 13)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시사점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으로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청정수소 관련 제품 등 항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 판매할 경우 생산비용의 일정 금액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입법이 추진되는 경우 적용대상기업은 특례 시행 기간, 내국인에 의한 국내 제조 및 국내 최초 사용 및 판매의 요건을 분석하여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R&D 및 투자 결정을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적 우선순위와 긴밀히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국민펀드를 통한 투자 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참여기준 및 조건에 대한 면밀한 파악 필요성 있음.

20. 반도체특별법 제정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통하여 기업이 개발과 생산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임.
-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의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기업의 국내자본 이동을 지원하여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할 예정임.
-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하여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서둘러 스마트그린반도체단지를 구축할 예정임.

입법 및 정책과제

- 현재 반도체특별법의 입법이 추진 중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반도체 생산시설,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근거 마련
 - 특별회계 및 전담기구 설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신설, 대통령직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혁신지원단 구성
-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조항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당간 갈등이 있음.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명시하지 않고 산업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한 바 있음.

기업의 시사점

- 새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를 전략산업으로 보고, 국가차원의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에 대응해 정부의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제도화 할 것으로 예상됨. 기업은 이같은 정책적 흐름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R&D, 설비투자, 첨단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특히 정부지원 프로그램 및 클러스터 조성계획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음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새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팹리스, 소재·부품·장비, 후공정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공급망 전반에서 국산기술 및 장비를 내재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새정부는 지역별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용인 등에 새로운 반도체 혁신거점을 개발하겠다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음. 기업은 정부주도의 산업클러스터 정책에 참여하여 부지 확보, 세제 감면, 기반시설 이용 등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지역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연계도 강화할 수 있음.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글로벌 4대 벤처강국 건설을 정책목표로 하여, 모태펀드 예산 및 벤처·스타트업 예산 대폭 확대, M&A 촉진 등을 통한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활성화, 글로벌 모태펀드 설립을 통한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참여 촉진, 연기금 및 연기금 투자펀드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유도방안 마련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입법 및 정책과제

- 현행법상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은 2035년인바, 통상의 투자기간이 8년인 점을 고려하면 2027년 이후부터 모태펀드의 신규 출자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
-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연기금과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과 “퇴직연금감독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함. 무엇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결단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됨.

기업의 시사점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및 회수 활성화는 직전 정부에서도 추진하던 정책이고,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중간 배분 절차를 간소화하고 M&A 목적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출자금액의 6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025. 5. 28 ~ 2025. 6. 17) 하였음.
- 이에 더하여, 향후 연기금의 벤처투자 유입과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벤처투자시장의 확대 및 벤처·스타트업시장의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22. 주식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 및 소위 '먹튀' 행위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입법 및 정책과제

- 새정부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상장법인 임직원·주요주주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청구하도록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됨.
- 상장법인 임원의 중요 전과기록 의무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우회인수 또는 차명 등을 목적으로 사모펀드(PEF) 및 투자조합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LP)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됨.

기업의 시사점

- 주가조작 및 단기매매차익 취득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내부통제시스템과 준법경영체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함. 특히, 임직원의 거래행위 관리, 미공개정보 보호 등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여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음.
- PEF 및 투자조합 투자자의 적격성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PEF/조합 운용사들은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요구될 것임. 이 과정에서 민간으로부터의 투자유치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으므로 규제 변화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시장의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하였음.
- 수급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장 구조를 경영성과·유동성·기업지배구조 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새로 구성하고 각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 및 유지요건을 적용하여 주식시장 자체를 재편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유동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코스닥벤처펀드의 지원을 통하여 신규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등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공급될 유동성을 국내외에서 확대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입법 및 정책과제

- 주식시장 상장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구체적인 입법안 등이 존재하는 상황은 아님.
- 다만, 자본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정부에서 상장 제도에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기업의 시사점

-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및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상장요건의 변화를 포함하여 시장 구조 변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변화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규제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선진국으로서의 책무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 체계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비율이 10% 미만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RE100 이행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됨.

입법 및 정책과제

-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①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쇄, ②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제도 개선, ③ 남서해안의 해상풍력 전력을 수도권 등 주요 산업지대로 신속히 송전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④ 스마트 그리드 및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계통 보완, ⑤ 전국 단위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⑥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대폭 확대임.
- 그리고 원전 관련 방침으로는 급진적 탈원전보다는 원전을 에너지 믹스의 일부로 유지하는 방향과 신규 대형 원전의 확대보다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기술 등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하여 집중 투자하는 방안이 예상됨.

기업의 시사점

-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에 따라 직접구매(PPA) 제도의 개선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의 RE100 이행수단이 다양화될 것으로 보이며,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2030년까지 기후테크 관련 R&D 예산 확대에 따라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 및 기술 혁신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환경 규제 변화에 따라 전력 요금 체계, 전력 공급 안정성,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변화 등 법률 리스크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함.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를 추진하고, 햇빛·바람 연금 지급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할 예정임.

입법 및 정책과제

-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8년까지 단계적 폐쇄를 결정한 40기 이외에 추가 14기의 석탄발전소 폐쇄계획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립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고속도로의 추진 목적은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을 확대하여 RE100 필요 기업과 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됨.
- 또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기존 송전사업자의 전력망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민간의 송전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므로,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

기업의 시사점

- 발전 공기업이 소유한 석탄발전소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민간 석탄발전소(예: 2024년 신규 진입한 삼척블루파워)는 암모니아 전소(全燒)로의 전환 또는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하여 정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이러한 보상 이슈와 규제동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햇빛·바람 연금은 신안군의 주민참여형 모델을 참조한 것으로, 주민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예: REC 가중치 상향,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등)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민참여형 사업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고속도로의 조기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 등 전력망 유연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투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사업구상 단계에서 전력망 보강계획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발전사업자나 대규모 전기사용자는 이에 기반한 입지 선정이 필요할 수 있음.

정책 개요

-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효율화 달성을 위하여 이중 전략이 제시되고 있음.
- 즉,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화력 발전소 전면 폐쇄(2040년), RE100 산업단지 구축, 지방전력요금 차등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고, 에너지 효율화 대응 측면에서는 해상 HVDC 기반 송전망 구축,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 스마트 전력망 구현 등이 추진될 예정임.

입법 및 정책과제

-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나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안은 존재하지 않으나, 과거 사례에 비추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은 신속하게 입안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기존 송전사업자의 전력망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민간의 송전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므로,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기업의 시사점

-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사 및 기자재 업체의 시장 참여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 송전사업자의 시장 진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업자 요건 및 수익구조를 선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인프라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재생에너지 관련 법제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계약 조건에 인센티브 조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또한, RE100 산업단지 확대에 따라 친환경 설비 및 기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전력요금 차등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입지 전략 수립의 중요성도 커질 것임.

27. RE100 산업단지 조성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RE100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탄소규제와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RE100 산업단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를 갖춘 전용단지임.
- 특히, 수출 중심의 제조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RE100 산업단지를 선정·조성하여 기업들의 기후 대응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입법 및 정책과제

- RE100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새만금, 전남지역은 물론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경기 남동부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조성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입지여건상 재생에너지 전력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구축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여 그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녹색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PPA 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것으로 보임.

기업의 시사점

- RE100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될 것임.
- 새정부는 기업들의 RE100 산업단지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력시장 규제 완화(직접전력구매 확대, 전력 거래방식의 유연성 제고, 전기요금의 계약당사자간 결정 허용 등)도 병행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기업들은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후에도 입주 기업에는 인센티브나 규제 특례가 제공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정책 개요

- 정부에서는 기술탈취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기술자료 유용행위 근절을 위하여 과징금 상향 조정, 손해배상액 최대 5배 상향 등 집행을 강화하여 왔으나, 그 외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디스커버리 제도: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로 소송 당사자가 상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나 서류를 공개하는 절차임.

입법 및 정책과제

- 새정부는 기술자료 유용 분야에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관련 입법안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2025. 3. 20)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시사점

-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기술자료 유용 시, 형사·행정상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민사(손해배상)상의 리스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수령 및 활용 시에 법령 준수에 유의하고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 필요 있음.

29.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정책 개요

- 최근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정부는 실용주의 기조하에 경제외교의 다변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새정부에서는 경제안보 강화 기조하에 전략산업 및 물자 보호,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과 공급망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입법 및 정책과제

- 국제적 통상환경의 지역적 다변화를 위하여 APEC, G20 등 다자포럼의 적극 활용 및 글로벌사우스, EU, 주변4국 등과의 교역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품목 다변화를 위하여 수출 잠재력을 보이는 K-방산, K-콘텐츠, K-식품 등에 대한 지원이 기대됨.
- 전략산업 및 물자 관련 국내생산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핵심기술 유출 단속 강화 및 국산 둔갑 우회수출 규제 등 무역안보 강화 공약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 관세법 등 관련 법령 제 개정이 예상되며,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급망안정화법상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등의 조치가 예상됨.

기업의 시사점

-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정책 기조에 비추어 향후 협상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또 한편으로는 외교통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핵심산업 지원정책 및 교역 다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불확실성에 대비한 해외진출전략의 점검이 필요함.
- 그리고 경제안보 강화는 관련 국내산업 보호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 시행 또는 입법 과정에서 기업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적극 의견 개진할 필요가 있으며, 강화된 무역안보 규제를 적극 활용하여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출입거래 시 변경되는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0. 철도 지하화 추진

정책 개요

- 향후의 정부에서는 철도 주변의 도시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 도심을 지나는 전철, 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 등의 지하화와 동시에, 지하화 구간 상부는 주상복합건물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의 추진이 활성화될 것임.
- 이를 위하여 철도 지하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입법 및 정책과제

- 현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는 철도지하화 사업과 철도부지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률임.
- 향후 사업 촉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개정과 더불어, 역세권법,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병행되어야 하며, 민간투자사업(PPP) 모델 도입 등 재원조달 방식의 다각화도 추진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기업의 시사점

- TBM공법, 철도구조물 지하화 등 전문 기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토목 및 엔지니어링 기업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임.
- 복합역사 개발 및 역세권 재개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추가적인 개발기회가 창출될 수 있으며, 민간참여형 복합개발(PFV 등) 모델의 확대에 따라 금융회사 및 디벨로퍼와의 협업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정책 개요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편법 증여를 차단하고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통하여 부의 세습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임. 기업 대주주 일가의 변칙 상속·증여를 엄격히 단속할 것으로 예상됨. 예컨대 기업 오너가 우회 거래를 통해 자녀에게 재산이나 지분을 이전하거나, 기업 내부 유보금이나 회삿돈 유출을 통한 부의 이전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됨.
- 상속세에 대해서는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점진적인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일괄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배우자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음. 다만, 기업승계에 관한 핵심 쟁점, 가령 기업상속 공제 요건 완화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에 대한 정책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입법 및 정책과제

- 제 한도 확대 또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입법안

- 임광현의원 대표발의(2024. 8. 21) 및 안도걸의원 대표발의(2024. 8. 23)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시사점

- 상속공제 한도 증액의 경우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효과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편법 증여 차단이라는 전체적 기조상 대기업 총수일가 및 기업상속을 고려하는 기업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 강화가 예상됨. 따라서 지배주주는 사전에 계획한 지분 승계나 재산 이전 전략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구조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사전 진단할 필요가 있음.

32. 보험시장 확대

정책 개요

-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새정부에서는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 산업재해보험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농어업 분야의 재해보상 현실화,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의료서비스 강화 등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입법 및 정책과제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예: 요양병원 간병비 포함)하고, 수가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하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범위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지속가능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함.
- 반려동물 보험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동물복지기본법"의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이 요구됨.

기업의 시사점

- 의료 관련 기업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특히, 요양병원 간병비 등) 및 수가 개편 방향을 주시하면서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하거나 기존 사업모델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공적보험의 역할 확대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추어 민간 보험사들은 새로운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보험 관련 정책은 펫보험 시장의 성장을 크게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사들은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신규 펫보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와 동물병원·펫샵·IT기업 간의 제휴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예: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보험상품, IoT 기반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의 개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33. 통신분야 개선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6G 등 핵심 인프라 기술 강화, 공정한 망이용 계약 제도화, 정보통신비 부담 감소를 정책목표로 하여, ① AI네트워크(6G) 핵심 기술 확보로 글로벌 장비 시장 선점 및 위성통신 기술 개발, ②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및 OTT 서비스 국내외 가격차별 해소 유도를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음.
- 이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국내 통신망 사업자(ISP)와 글로벌 OTT간 수 년째 갈등 중에 있어 망 이용대가 관련 규제 정립의 필요성이 증대하였고, 네트워크 경쟁력은 산업 혁신을 좌우하는 척도로서 6G 상용화 관련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데 따른 것임.

입법 및 정책과제

- 새정부는 2030년까지 6G 상용화를 추진(2028년 시범서비스)하고, 단통법 폐지에 따른 알뜰폰 및 자급제폰 활성화를 추진하며,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 계속 사용 가능) 도입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망 이용대가 사후 규제 등 공정한 망 이용 계약의 제도화도 추진할 예정임.
- ※ 관련 입법안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2024. 10. 30) 및 이해민·김우영의원 대표발의(2024. 8. 8)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시사점

-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으로 통신사의 요금제 및 수익모델에 변화가 예상됨.
- 통신사는 망 이용대가 협상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및 투명한 계약 조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대비한 네트워크 투자 계획 수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통신사는 6G 핵심 기술 개발과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시장 선점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34. 방송·미디어 개선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에 기반한 방송미디어 규제체계 선진화, 유료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 문화콘텐츠의 국가지원 체계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지원 강화를 정책목표로 하여, ① 방송미디어 관련 동일·유사 서비스 간 규제의 형평성 개선, ②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콘텐츠사업자 간 공정하고 투명한 대가 산정시스템 마련, ③ 콘텐츠 R&D 지원 강화 및 새로운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기구 개편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음.
- 이는 그동안 OTT와 전통방송 등 미디어 간 비대칭 규제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확산되고, 현행 규제체계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할 필요성이 증대된데 따른 것임.

입법 및 정책과제

- 새정부는 방송·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사후 규제체계 및 네거티브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AI콘텐츠·콘텐츠플랫폼 등 콘텐츠 신성장·원천기술 지원 분야 확대 및 콘텐츠 이차보전사업 규모를 확대하며,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신유형의 미디어 플랫폼 및 콘텐츠에 대한 진흥과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입법안

- 박정하·임오경의원 대표발의(2025. 3. 11)의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2024. 12. 31)의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기업의 시사점

-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대가 협상은 자율 원칙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조정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고, 대가 산정시스템 마련 시 투명한 산정 기준 및 감독 체계 수립 등 자율적 거래 프로토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사와 플랫폼 사업자 등은 제도개선에 따라 수익 분배 모델의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음.

35. 사이버 보안 개선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구축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보안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정책목표로 하여, 데이터 중심 정보보호체계 전환 및 침해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 부과와 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안전 대응 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음.
- 이는 최근 통신회사의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 등으로 사이버 침해 대응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고,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가 핵심 인프라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된데 따른 것임.

입법 및 정책과제

-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능동적 사이버 보안 대응기술 개발 및 정기적 합동훈련을 통한 협력 대응체계 고도화, ② 사이버 보안기술 다양성 확보 및 핵심기술 국산화 지원, ③ AI 기술 악용한 딥페이크, 신종 보이스피싱 등 적극 대응 및 근절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음.
-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 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입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관련 입법안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2025. 5. 22) 및 전용기의원 대표발의(2024.11. 13)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2025. 5. 1)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2025. 4. 28)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시사점

- 최근 딥페이크, 신종 보이스피싱 등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
- 이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보안 관련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 및 고도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 관련 정보보호 투자액, 전담이력 규모, 인증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문서화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높은 부가가치와 국가브랜드 제고효과를 고려하여 문화재정의 대폭 증액 및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해외 진출을 전폭 지원할 예정임.
- 그리고, K-콘텐츠 창작의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입법 및 정책과제

- 입법적으로 K-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확대 및 플랫폼 규제 정비를 위하여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과 문화예술인지원법 개정,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창작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등이 추진될 수 있음.
- OTT 지원법 정비 등을 통하여 국내 OTT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한 e스포츠 육성 등도 예상됨.

기업의 시사점

- 새정부는 콘텐츠펀드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은 정부 주도 공모사업에의 참여를 통한 제작지원금, 마케팅 지원 확보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새정부는 창작자의 권익 보호, 불공정 계약 근절,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기본소득형 지원체계 도입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창작자와의 관계에서 파트너십 모델을 강화하고 공정한 수익배분구조와 장기적 성장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됨. 또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창작지원 사업, 제작비 보조, 세제 혜택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기업차원에서도 IP 가치제고 전략을 마련하고 IP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목표하에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R&D 투자규모를 확대할 예정임.

입법 및 정책과제

- 성과도출형 R&D 정책 및 R&D 투자비율에 연동하여 약가를 보상하는 제도 도입이 예상됨.
- 국산 신약을 수출하는 제약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각 지역별 산업육성방안으로서 대구경북지역, 대전충청지역, 제주도, 전라남도화순 등에 바이오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예상됨.

※ 관련 입법안

- 안도걸의원 대표발의(2025. 1. 22)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시사점

- 바이오산업 R&D 지원에 많은 규모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나 그 규모나 구체적 지원내용, 조건 등은 차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정책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수출중심 신약 포트폴리오에 대해 세제 등의 혜택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됨.
- 주요생산기지, R&D센터, GMP시설을 새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산업클러스터에 두는 경우 보조금 지원, 부지 제공, 인허가 특례 등의 정책적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8.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는 정책목표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대상별·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

입법 및 정책과제

-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① 합리적 수가체계 마련, ② 국고지원 일몰제 개선, ③ 대안적 지불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함.
-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비만예방관리법"을 제정하여 전국민 비만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아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등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입법 및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희귀필수의약품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생산하는 국내제약기업을 지원할 계획임.

※ 관련 입법안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2024. 12. 31) 및 황정아의원 대표발의(2025. 1. 24)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시사점

- 새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약제·치료재료 등의 급여화에 우호적인 정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임. 특히, 희귀·난치질환 및 소아비만, 소아당뇨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헬스케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과잉진료를 야기하는 것으로 평가받던 경증 관련수가 개편이 예상되며, 경증진료 수요 감소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등의 시장수요 양상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전반적으로 급여대상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기업은 선제적으로 의약품의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등을 통한 임상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가격인하 방어를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정책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비급여로 처방되는 의약품 및 비급여 시술과 이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등에 대한 직간접적 가격통제 가능성에 대비하고 정책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국가필수의약품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므로 그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 정책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39. 의료개혁 추진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의료접근성의 지역격차 해소와 응급·분만·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할 예정임.

입법 및 정책과제

-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개혁의 대원칙과 방향을 합의하고 공론의 장을 거쳐 세부정책을 마련할 예정임.
-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인상 등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을 추진할 예정임.
-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의한 재진환자 중심으로 허용하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에 대하여는 초진 비대면진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 관련 입법안

- 김윤의원 대표발의(2024. 7. 11)의 "필수의료강화 특별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시사점

- 전반적인 의료정책 형성과정에 공론화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논의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론화위원회에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수의 지역병원 및 의대가 신설 또는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후 결정될 신설·확충 규모에 따라 병원 신설 및 확장 시 구비를 요하는 의료기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비대면진료 법제화로 인하여 비대면진료 시장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비대면진료 플랫폼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의 배송문제에 관하여는 의료법 개정 이후 약사법 개정단계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규제방향에 따라 의약품사업 전략을 탄력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40. 수사기관 구조 개혁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수사절차법 제정,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또한, 자본·손익 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먹튀·시세조종 근절로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 금융사고 책임자 엄정처벌 및 금융보안 의무위반 징벌적 과징금 부과도 정책과제에 포함되었음.

입법 및 정책과제

- 수사·기소 분리 방안은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여, ① 공소청 검사는 수사권 없이 공소제기 및 유지, ②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은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폐지에 따라 노동청·금융감독원 등 특별사법경찰의 독자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다만 수사의 밀행성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어 입법화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기업의 시사점

- 수사라는 동일한 권한을 가진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 사이에 위상 제고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고, 특별사법경찰의 독자성이 강화되는 등 전체적으로 수사의 총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언론의 주목 대상인 대기업 등에 대한 경우 각 수사기관의 전방위적 수사,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 또는 재수사의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려움.
- 기업은 형사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준법 경영과 컴플라이언스 강화 및 외부 법률전문가를 통한 상시 점검 등의 대비 강화가 필요함.

정책 개요

- 새정부에서는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정책과제로 포함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재판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사법기능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입법 및 정책과제

- 대법관 수의 경우 현재의 14명에서 그 이상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김용민의원 발의 개정안의 경우 30명으로 증원).
-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일부 민사사건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판결서 공개를 현재보다 더욱 확대하여 사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입법안

- 김용민의원 대표발의(2025. 5. 2)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범계의원 대표발의(2025. 4. 14)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시사점

- 대법관 증원의 경우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사건 처리의 신속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반면, 대법원의 역량 약화와 판례 지도력 약화로 인해 하급심의 사건처리 역량 및 예측가능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음. 기업으로서는 판례의 변경과 소송 관행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음.
- 기업 관련 중요재판에 대하여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 필수적인 것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